



대구대학교-대한장애인체육회 상호교류협약서



제1조(목적)

본 협약은 대구대학교와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상호협력을 통하여 장애인체육발전에 기여하고, 양 기관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고자 다음의 사항에 협력할 것을 합의하며 이 협약을 체결한다.

제2조(협력내용)

대구대학교와 대한장애인체육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분야에 대하여 상호협력하기로 한다.

1. 장애인 국가대표 훈련 공간 제공 및 활용
2. 캠퍼스 연계 장애인체육 및 건강증진 시설 인프라 구축
3. 장애인 체육시설의 공동 활용
4. 장애인 체육에 관한 연구 활동 및 교육 지원
5. 기타 학·관 협력에 관한 사항

제3조(협약의 이행)

양 기관은 신의를 바탕으로 본 협약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.

제4조(재정부담)

본 협약의 이행으로 인해 직·간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.

대구대학교-대한장애인체육회 상호교류협약서

제5조(비밀유지)

양 기관은 본 협약의 이행 중 취득한 정보를 상대방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제3자에게 유출하지 않는다.

제6조(협약 조정)

본 협약 후 해석상의 이의가 있거나 추가 협의사항이 발생할 경우 양 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조정 또는 변경한다.

제7조(효력)

본 협약은 양 기관의 대표자가 서명한 날부터 유효하며 일방이 서면으로 해지의사를 표명하지 않는 한 매년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.

양 기관은 본 협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
대표자가 서명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.

2017년 7월 3일



총장 홍덕률





회장 이명호

